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(공고)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년 4월 8일(월) 오전 9시 00분

2. 장 소 : 쉬프트정보통신(주) 본점 교육장
- 위 치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(삼평동) PDC타워 C동 602호

- 대중교통 이용방법
지하철 : 판교역(신분당선) 4번 출구에서 버스 탑승 후, 이노밸리 버스 정류장 하차
(이용가능 버스 : 71, 75, 602-1, 602-2)

3. 회의목적사항

《부의 안건》

제1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(전자증권제도 도입)

제2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(10억 원)

제3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(1억 원)

제4호 의안 :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 하에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신분증.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, 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의 신분증.

6. 기타 관련 문의는 총무팀 임지수 과장에게(02-464-7676)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03월 25일

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

대표이사 최 영 식 (직인생략)

위 임 장

성 명 : (주민번호 :)
주 소 :

위의 사람에게 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체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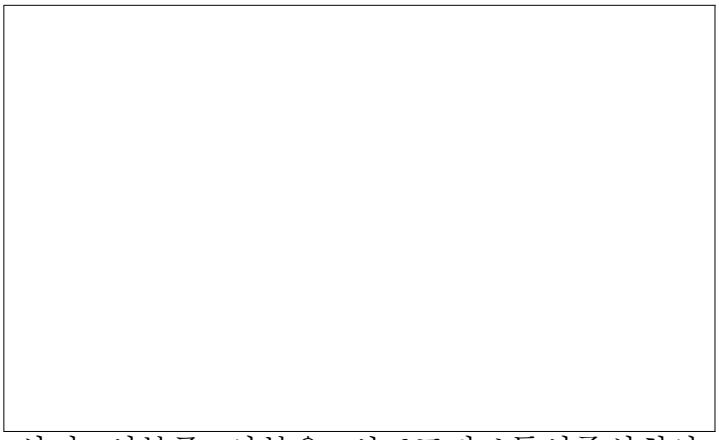
1. 회사명 : 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
2. 의결권 주식수 :

2019 년 월 일

주 주 성 명 : (주민번호 :)(서명or인감)
주 소 :
전화번호 :

유 첨 : 신분증 사본 1부.

신분증 사본



상기 신분증 사본은 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 임시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한 현장 출석 확인에 사용 합니다.

2019. . .

▣ 쉬프트정보통신 정관변경(안)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8 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.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.	제 8 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.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. 단,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.	
(신설)	**제8조의2(주식 등의 전자등록)** 회사는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	
제 15 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	**제 15 조 (명의개서대리인)**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「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	
제 16 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 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	**제 16 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**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.	
(신설)	**제16조의2 (주주명부)**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.	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22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	**제 22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**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다만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.	
제 55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 위원회(또는 감사위원회)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하거나,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.	**제 55 조 (외부감사인의 선임)**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「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	
	부칙 이 정관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8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 2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	